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경위

가. 제출자 : 김영철 의원 외 16명

나. 의안번호 : 제1342호

다. 제출일자 : 2023. 10. 16.

라. 회부일자 : 2023. 10. 23.

2. 제안사유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이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시행령」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서울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특별한 계획적 변경 요소가 없음에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치고있음. 이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상위 법령 수준으로 완화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별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부지면적 기준을 “5만 m^2 이상”에서 “10만 m^2 이상”으로 변경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0. 26. ~ 2023. 10. 30.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계기관 의견¹⁾

○ 제출의견 : 수정가결

- 소규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시 심의로 인해 계획 확정·고시 지연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규모 개별사업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행
-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심의기준을 부지면적 10만 m^2 으로 완화하되, 부지면적 5만 m^2 ~10만 m^2 의 경우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교통분야) 2인 이상의 의견을 반영할 것

1) 교통정책과-19574호('23.11.15.)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²⁾에 따른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부지면적 5만 m^2 이상”에서 “10만 m^2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교통영향평가란 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항만·도로·철도·공항 건설, 관광단지 개발, 체육시설 설치 등의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도시교통법) 제15조³⁾ 및 같은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3)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도시의 개발 2~12. <생략>
 - ③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

법 시행령 제13조의2⁴⁾에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도시교통법에서 정하는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행 조례에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부지면적을 도시교통법에서 정한 부지면적 기준(10만 m^2 이상)보다 강화된 기준(5만 m^2 이상)을 적용하고 있음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도시교통법 시행령 별표1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별표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부지면적 10만 m^2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 부지면적 5만 m^2 이상

- '23년 7월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개선방안 보고5)”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은 대부분 소규모 개별필지 단위로 수립하므로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유발 효과가 낮음에도 다른 개발사업과 동일한 부지면적기준을 적용⁶⁾하는 것은 문제이고

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⑦ 볍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1.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

2.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시·도지사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범위

5)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개선방안 보고(도시관리과-8031호, 행정2부시장 제193호, '23.7.31.)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음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포함된 개별사업 및 시설은 별도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어 중복 행정이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시까지 약 6개월 정도의 사업지연⁷⁾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하는 법개정 건의 및 현행 조례 완화 등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어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정책에 일부 부합한다 할 것임

- 동 개정조례안이 적용될 경우 5~10만 m^2 규모의 지구단위계획의 도시계획결정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게 되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간이 단축되고, 규제 완화 및 평가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3년간 해당사업의 심의건수는 총 14건으로 전체 교통영향평가 심의건수에 비하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6) 현행조례 별표1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m^2 이상”인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7) 지구단위계획 및 교통영향평가 절차(사전협의 및 심의 : 평균 6개월 소요)

[지구단위계획 절차]



※ 교통영향평가 심의현황

(단위:건수, 市 내부자료)

구 분	계	'21년	'22년	'23년 11월
전체 심의건수	298	109	101	88
지구단위계획 관련 심의건수	69	24	20	25
5~10만 m^2 이하 지구단위계획 관련 심의건수	14	8	3	3
5~10만 m^2 이하 지구단위계획 관련 심의결과 보완인 경우	7	4	1	2

- 다만 교통영향평가의 본질은 사업 또는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장래에 예견되는 교통혼잡, 사고 등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3년간 동 규모(5~10만 m^2)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관련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수(14건) 중 7건(50%)이 “보완”으로 심의결과⁸⁾가 나왔다는 점은 사업규모가 작더라도 전문가 집단이 교통영향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것임
- 또한 '02년 동 조례⁹⁾와 시행규칙¹⁰⁾ 최초 제정시 교통영향평

8)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제27조(보고서 심의 및 심의내용 통보)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의결 :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원안대로 수용하는 경우
2. 수정의결 :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교통개선대책을 제시하는 경우
3. 보완 : 제2호에 따라 수정 또는 추가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여 이를 보완한 후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보완(소위원회 상정) :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여 이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때 소위원회 심의위원은 소위원회 기간동안 동일한 심의위원으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음

9)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3985호, 2002. 3. 20., 제정·시행] 제4조(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환경 및 재해분야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으며,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가 대상사업의 규모는 관련 법¹¹⁾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는 바 이는 대도시 서울의 도시개발특성상 법이 정한 대상사업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 등)인 경우에도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¹²⁾한 것임

-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로 장래 교통혼잡을 사전에 방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과 지구단위계획 사업기간 및 관련비용 증가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중 어떠한 것이 서울시민에게 유리한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서울시 교통정책과는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심의 기준 부지면적을 10만 m^2 로 완화하되, 부지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별표1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및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규칙으로 세부기준을 정하여 완화할 수 있다.

10)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3265호, 2002. 6. 25., 제정·시행]
별표1 :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및 평가서 제출 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	(자) 도시계획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 <u>부지면적 2만5천m^2 이상 5만m^2 미만</u>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전

11)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137호, 2001. 2. 24., 타법개정·시행]
별표1 :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	(자) 도시계획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u>부지면적 5만m^2</u>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전

12) 제152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1차(2002년2월22일)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 검토보고

면적이 5~10만 m^2 의 경우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교통분야) 2인 이상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출¹³⁾한 바 있음

13) 교통정책과-19574호('23.11.15.)